

애플리케이션

① 압류서

- ②다음과 같이 체납된 시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합니다.
③체납자 ④주소(소재지) ⑤성명(명칭) ⑥체납금액 ⑦합계(법률에 의한 금액) ⑧체납처분비 ⑨재산
⑩(압류재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) ⑪비고
⑫

〈구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심사청구서(정부 2통)는 당 구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승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〈납세관리과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⑬ 문의처

압류조서(등본)

① 애플리조서(등본)

② 다음과 같이 체납된 시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, 국세징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. 또한, 이 채권의 추심, 기타 처분을 금지합니다.
③체납자 ④주소(소재지) ⑤성명(명칭) ⑥체납금액 ⑦합계(법률에 의한 금액) ⑧체납처분비 ⑨재산
⑩(압류재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) ⑪비고
⑫

〈구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심사청구서(정부 2통)는 당 구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〈납세관리과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⑬ 문의처

압류조서(등본)

① 애플리조서(등본)

② 다음과 같이 체납된 시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, 국세징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.

③체납자 ④주소(소재지) ⑤성명(명칭) ⑥체납금액 ⑦합계(법률에 의한 금액) ⑧체납처분비 ⑨재산
⑩(안로재산에 관한 내용이 관계되어 있습니까) ⑪부록

12

〈구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심사청구서(정부 2통)는 당 구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〈남세관리과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⑬ 문의처

압류조서(등본)

- ① 압류조서(등본)
 - ② 다음과 같이 체납된 시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142조를 토대로 수색을 실시해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, 국세징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.
 - ③ 체납자 ④ 주소(소재지) ⑤ 성명(명칭) ⑥ 체납금액 ⑦ 합계(법률에 의한 금액) ⑧ 체납처분비 ⑨ 재산
 - ⑩ (대상 재산명칭 등 또는 별지 참조) ⑪ 수색 일시
 - ⑫ 체납처분을 위해 수색한 장소 또는 물품
 - ⑬ 위의 수색에 입회하여 압류조서(등본)를 수령했습니다.
 - ⑭ 압류조서(등본)(수색을 받은 자 앞)를 수령했습니다.
 - ⑮ 본 조서는 등본에 기재된 이고재산의 내용을 명시합니다.

17

<구로부터의 통지인 경우>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심사청구서(정부 2통)는 당 구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〈남세관리과로부터의 통지인 경우〉

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(지방세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이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요코하마시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통지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요코하마시를 피고로 하여(요코하마 시장이 피고의 대표자가 됩니다.)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한 처분의 취소 소송은 앞서 언급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① 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, ② 처분,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, ③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⑯ 문의처